

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442
----------	------

2018년 4월 9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
- 나. 제안일 : 2018년 3월 20일
- 다. 회부일 : 2018년 3월 26일
- 라. 상정일 : 제28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18년 4월 9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평생교육국장 주용태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
-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, 2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
- 청소년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·운영

2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제18조
- 「청소년 복지지원법」제29조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) 위탁사무 내용

- 청소년 연구 및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개인·전화·사이버·집단상담 등 상담사업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(이하 '상담복지센터')는 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,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와 2년간(2018.7.1.~2020.6.30.)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
<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>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
- 개관일자 : 1997.9.19.
- 시설규모 : 1,516㎡(지상 6층·7층)
- 이용대상 : 청소년(만9세~24세)
- 위탁사무 내용
 - 청소년 연구 및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개인·전화·사이버·집단상담 등 상담사업
 -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, 청소년동반자 사업
 -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운영
- 위탁기간 : 2년(2018.7.1.~2020.6.30.)
-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)
- 소요예산 : 4,542백만원(2018년)

- 평생교육국은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가 각종 심의와 평가를 통해 재계약 추진에 대해서 적정의 결정을 받았고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,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재계약 추진사유를 제출하였음.

<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추진 경과 >

- 1997.4.28.~1999.12.31.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 (2년 6개월)
- 2000.1.1.~2001.6.30.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 (1년 6개월)
- 2001.7.1.~2004.6.30.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 (3년)
- 2004.7.1.~2007.6.30.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 (3년)
- 2007.7.1.~2010.6.30.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 (3년)
- 2010.7.1.~2013.6.30.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 (3년)
- 2013.7.1.~2015.6.30.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 (2년)
- 2015.7.1.~2018.6.30.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 (3년)
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법인인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는 평생교육국의 지도·점검에서 2014년 인력 채용시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나, 201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재차 지적된바,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,
- 회계담당자 관련 미지정 및 재정보증 미가입 등은 2013년과 2015년에 중복 지적된바 있고,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2014년과 2015년에 연속적으로 지적되는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지속·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바,
수탁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지도·점검 결과가 차기 재계약 심사(별점제)에 반영(계약해지 등) 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- 상담의 성과 및 결과는 양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며, 각 상담 대상자마다 특성과 여건이 상이하여 적절한 성과기준을 수립하기 곤란한 점은 있겠으나, 성과평가 기준을 이용인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, 적절한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5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44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3월 2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, 2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- 다. 청소년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·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청소년 연구 및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개인·전화·사이버·집단상담 등 상담사업
-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, 청소년동반자 사업
-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운영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
- 개관일자 : 1997. 9. 19.
- 시설규모 : 1,516㎡(지상 6층·7층)
- 이용대상 : 청소년(만9세~24세)

○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년(2018.07.01. ~ 2020.0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4,542백만원('18년)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732백만원, 물건비 143백만원, 경상이전 181백만원, 사업비 3,486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지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석상우 (☎2133-4129)

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

□ 민간위탁 개요

○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사업내용 : 청소년 상담 등 서비스 제공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
- 시설규모 : 1,516m²(지상 6층·7층)
- 주요사업 : 청소년 연구 및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
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운영, 청소년동반자사업
- '18년예산 : 4,542백만원

○ 위탁 추진경과

- 1차 : 1997. 4.28. ~ 1999.12.31.(2년 6개월,(사)한국청소년육성회)
- 2차 : 2000. 1. 1. ~ 2001. 6.30. (1년 6개월,(사)한국청소년육성회)
- 3차 : 2001. 7. 1. ~ 2004. 6.30. (3년,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)
- 4차 : 2004. 7. 1. ~ 2007. 6.30. (3년,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)
- 5차 : 2007. 7. 1. ~ 2010. 6.30. (3년,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)
- 6차 : 2010. 7. 1. ~ 2013. 6.30. (3년,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)
- 7차 : 2013. 7. 1. ~ 2015. 6.30. (2년,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)
- 8차 : 2015. 7. 1. ~ 2018. 6.30. (3년, (사)한국청소년육성회)

□ 성과평가 개요

- 수행기관 :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(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)
- 평가기간 : 2017. 1~10월
- 대상기관 : 시립청소년시설 53개소
- 평가방법 : 서류(90점)+우수사례(10점)/시설 유형별 그룹화(3개) 평가

□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결과

○ 평가 결과요약

(단위: 점)

운영 및 관리 (20)	청소년 프로그램 (15)	인사 및 조직 (12)	시설환경 및 안전 (7)	대외협력 및 홍보 (11)	발전 노력 (5)	특화 사업 운영 (20)	우수 사례 (10)	합계 (100)
20	15	12	7	11	5	20	9	99

○ 세부내용

평가영역	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배점	평가점수
1. 운영 및 관리	1.1. 기관 운영 계획	1.1.1.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	5	5
		1.1.2. 운영위원회 체계 및 활동	5	5
	1.2. 기관운영 및 관리	1.2.1. 청소년사업비 집행 비율	5	5
		1.2.2. 컨설팅 및 평가개선 사항에 대한 사업추진실적	5	5
2. 청소년 프로그램	2.1.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	2.1.1.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	5	5
		2.1.2. 프로그램 수행과정	5	5
		2.1.3. 프로그램 평가	5	5
3. 청소년 이용 및 참여	3.1. 청소년 시설이용	3.1.1. 청소년이용률	-	-
		3.1.2. 청소년동아리 활성화	-	-
	3.2. 청소년참여 활성화	3.2.1.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	-	-
4. 인사 및 조직	4.1. 청소년지도사 확보	4.1.1. 청소년지도사 법적 기준 준수	-	-
		4.1.2. 직원확보 수준의 적정성	-	-
		4.1.3. 청소년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 수준	2	2
	4.2. 직원교육 및 복리후생	4.2.1.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 시간	3	3
		4.2.2. 직원 안전 교육	2	2
		4.2.3. 직원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적절성	5	5
5. 시설환경 및 안전	5.1. 시설환경 및 안전	5.1.1. 시설환경의 쾌적성	3	3
		5.1.2. 시설 안전관리의 적절성	4	4
6. 대외협력 및 홍보	6.1. 대외협력 및 홍보	6.1.1. 대외협력 및 연계정도	6	6
		6.1.2.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	5	5
7. 발전노력	7.1. 발전노력	7.1.1. 전반적 발전노력	5	5
8. 특화사업		8.1.1. 구 센터 지도·지원	5	5
		8.1.2. 실행위원회 운영	5	5
		8.1.3. 위기청소년 지원	5	5
		8.1.4. 상담관리 방법의 적정성	5	5
우수사례			10	9
총점			100	99

□ 평가결과보고서

평가영역	평가결과
1. 운영 및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설립취지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목표와 추진계획을 매우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. 그리고 연도별 예산계획은 발전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으며, 중장기 목표 대비 성과평가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. 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의의 독자적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, 공식적인 운영 규정 심의 및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. 직제, 인사, 보수, 복무, 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, 운영위원회에 외부 운영위원이 포함되어 있고, 운영위원회 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. ○ 기관의 청소년사업비 집행률은 77%로 매우 우수한 수준임. 컨설팅 및 평가개선 사항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은 매우 우수함.
2. 청소년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간운영계획서와 기본방향, 추진계획, 단위사업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으며, 이들 상호간의 연계성 수준이 매우 높음. 단위사업별로 안전확보 계획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음.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운영목표와 수단간의 관계 역시 우수함.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정에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가 매우 우수함. ○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투입인력의 확보수준이 매우 우수함. 단위프로그램별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과 물적/재정적 자원의 확보수준 역시 매우 우수함. 프로그램의 홍보활동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. ○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,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있음. 평가결과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이 있으며, 평가도구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함.
3. 청소년 이용 및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사항 없음
4. 인사 및 조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관련 전문가자격증 소지수준은 월평균 전체 직원수 53명 대비 청소년관련 전문 자격증 총점이 225점으로 매우 우수함. ○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실적이 매우 우수한 수준이나, 일부 사례회의의 경우 단순 회의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, 일반 회의와 사례연구회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○ 직원 안전교육과 직원복지후생제도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음
5. 시설환경 및 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·운영하고 있으며,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통해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고,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보고한 실적이 있음
6. 대외협력 및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외 협력 및 연계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으며, 관련 기관 명단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○ 홍보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으며, 이를 토대로 다양하면서도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7. 발전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의 청소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평가사업에 대한 시설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
8. 특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특화사업 평가기준인 구 센터 지도 및 지원, 실행위원회 운영, 위기청소년 지원, 상담관리 방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업 진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실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

□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 실적

○ 총괄 정산내역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액 (a)	집행액 (b)	집행잔액 (c) = (a) - (b)
2017	4,356,990	4,304,565	52,425
2016	4,082,164	4,046,354	35,810
2015	4,025,789	3,950,497	75,292

○ 세부 집행내역

(단위 : 천원)

연도	합계	인건비	물건비	경상이전	자본지출	사업비
2017	4,304,565	664,476	191,310	168,903	8,639	3,271,237
2016	4,046,354	603,702	190,523	137,098	10,517	3,104,514
2015	3,950,497	533,901	169,227	121,184	25,631	3,100,554

□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

○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협약 체결

-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'18.6월말까지 비용심사, 재계약 협약 체결

○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

-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
-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